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7 선고 2021가단1051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9. 7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0,097,062원 및 그 중 13,004,851원에 대하여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7. 12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,097,0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0,097,06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나.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